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3-73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4. 2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 통장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기진작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신설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효율적인 통장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장의 임기와 해임 규정을 일부 정비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 통장 사기진작 규정 정비 및 일부 내용 신설(안 10조의 2)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통장 임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 ▷ 연임횟수 제한 폐지, 통장 임기 만료일 상·하반기로 일괄 조정.
- 통장 해임 규정 용어 정비 및 사유 추가 신설(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정구청

- 주 소: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총무과

- 전 화: 051-519-4114, FAX: 051-519-4019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지/입찰/고시 > 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통장의 현장 활동 수행,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을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통장의 현장활동 수행
3.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4.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5. 종합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 협약체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u>사기진작을 위하여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통장의 현장 활동 수행,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10조의2(사기진작) ----- --- <u>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u> 2. <u>통장의 현장활동 수행</u> 3. <u>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u> 4. <u>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u> 5. <u>종합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 협약체결</u>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세 차례만”을 “하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반기별 기준으로 만료된다.

1.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 임기 만료
 2.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 임기 만료
- 제6조제1항제4호 중 “주민”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10.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장회의에 무단불참 하는 등 지속적
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 세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다.</p> <p>② <u>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금성동은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로 한다.</u></p> <p><u><신 설></u></p>	<p>제5조(통장의 임기) ① ----- ----- 하되 ----- ----- . <u><단서 삭제></u></p> <p><u><삭 제></u></p> <p>③ <u>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반기별 기준으로 만료된다.</u></p> <p>1. <u>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 임기 만료</u></p> <p>2. <u>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 임기 만료</u></p>
<p>제6조(통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u></p>	<p>제6조(통장의 해임)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주민-----</u></p>

5.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10.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
정을 위반한 때

11.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
하는 통장회의에 무단불참 하
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② (현행과 같음)